

재단법인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설립 및 지원에  
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 검 토 보 고 서



충청북도의회  
산업경제위원회

재단법인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설립 및 지원에  
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이종갑 의원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제출일자 : 2022년 11월 14일

나. 회부일자 : 2022년 11월 16일

3. 제안이유

조례에 인용된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,

『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』에 따라 문장 및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함

4. 주요내용

가. 인용 법령의 명칭 중 「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」이 「소프트웨어  
진흥법」으로 전부개정(시행 2020. 12. 10.)됨 따라 이를 바로잡고,  
일부 용어와 띄어쓰기 등을 정비함 (안 제2조)

나. 『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』에 따라 문장 및 용어 등을 정비함  
(안 제4조 ~ 안 제8조)

- 약칭 사용 등 일부 용어를 정비함(안 제4조, 안 제5조)
- 간결하고 명확한 문장으로 자구를 정비함(안 제7조)
- 부수적·추가적인 내용을 후단으로 정비함(안 제8조)

## 5. 검토의견 (산업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신복순)

### 가. 제출배경

- 이 조례에 인용된 법률 중 「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」이 2020년 6월 「소프트웨어 진흥법」으로 전부개정되어, 조례에서 사용하는 ‘소프트웨어산업’의 정의가 변경되었으나, 이를 개정하지 않아 개정 소요가 발생함
- 이 조례는 2003년 제정되어 『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』에 따른 자구 등의 수정과 어법에 맞지 않는 용어 등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음

### 나. 개정안의 주요 조항에 대한 의견

- 안 제2조는 정의의 근거가 되는 인용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, 잘못된 띄어쓰기를 정비하였음
  - 제2호에서 ‘소프트웨어산업’의 근거인 「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」이 2020년 6월 9일 「소프트웨어 진흥법」으로 ‘전부개정’되었고, ‘소프트웨어산업’의 정의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음

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(2018. 2. 21. 일부개정)	소프트웨어 진흥법 (2020. 6. 9. 전부개정)
<b>제2조(정의)</b> 2. “소프트웨어산업”이란 소프트웨어의 개발, 제작, 생산, 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 및 「전자정부법」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 <sup>2)</sup> 의 구축·운영 등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.	<b>제2조(정의)</b> 2. “소프트웨어산업”이란 소프트웨어의 개발, 제작, 생산, 유통, 운영 및 유지·관리 등과 그 밖에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.

- 소프트웨어산업은 정보시스템의 기술적 수단으로 그 의미가 달라 개정 이전의 정의를 사용 시 법적용의 오류 또는 혼란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, 조례개정의 타당성은 충분함

2) 「전자정부법」 제2조제13호 “정보시스템”이란 정보의 수집·가공·저장·검색·송신·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기기와 소프트웨어의 조직화된 체계를 말한다.

- 제9호에서 ‘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고시한’ 을 ‘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한’ 으로 개정된 것은 정부 고시의 주체를 명확히 한 것으로 적절함
- 안 제7조는 업무위탁과 관련하여 제1항의 ‘사업이나 시설 또는 업무’ 가 명확하지 않아 자구를 정비하여 조항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개정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됨
- 안 제8조는 보고 및 검사에 관한 사항으로 ‘도지사가 경영지도를 할 수 있고, 공무원에게 확인 등을 하게 할 수 있다’ 라는 의미로, 기존에 복잡하고 길게 서술된 문장을 전단과 후단으로 구분하여 문장의 복잡성을 피하고, 그 의미를 명확히 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됨
- 그 밖에 『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』에 따라 잘못된 기술된 약칭 사용과 법령 이름에 사용하는 홑낫표(「 」)의 띄어쓰기 등을 정비한 것으로, 특별한 문제는 없음

#### 다. 종합의견

- 이 조례안은 조례에 인용된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, 『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』에 따라 문장 및 용어 등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법률적인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,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충분함
- 다만, 2020년에 개정되어야 할 사항이 현재까지 개정되지 못한 이유와 개정하지 않았어도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지원 및 사업추진에 문제점은 없었는지 집행기관의 설명이 필요합니다.